경운대학교 총학생회회칙

학생회 회칙 전문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낸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학생 자치기구로서, 학생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조직하였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명칭은 "경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유능한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학생활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며, 대학 내의 자유 속에서 학술연구의 학풍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설치) 본회는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가진다.
-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칙과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수혜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제7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수 없으며, 자치기구의 성격을 벗어난 학교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 제8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 제9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술 연구 활동
 -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활동
- 제10조(구성) 본회는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집행위원회, 대의원회의 기구를 둔다.

제1절 집행위원회

- 제11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1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 1인, 부총학생회장 1인, 국장•부장 각 1인 및 차장 각 2인으로 구성하되,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한 당선인이 되고 각 집행부의 국장•부장•차장은 학과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 제13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제14조(부서) 집행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사무국 : 본회의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 2. 기획국 : 본회의 각종 행사운영의 기획 · 조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3. 학술국 : 본회의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4. 체육국 : 본회의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5. 복지국 : 본회 회원의 인권 및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반업무와 대내 · 외 각종 봉사활동, 수련활동 및 동아리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6. 홍보국 : 본회의 활동에 관한 각종 홍보사업과 섭외활동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15조(직무)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 ② 부총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총학생회장 유고 시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부서장 중 1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제16조(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의 정기회를 가지며, 학교 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나 총학생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기능) 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업무를 처리한다. 업무는 각 호와 같다.
 -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추진
 -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4. 회칙 개정 및 수정 발의
 - 5.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8조(지위) 대의원회는 총학생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9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각 학과 학회장으로 구성하며, 신학기초에 구성한다.

경운대학교 총학생회회칙 3

② 대의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 임원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 피선거권 등 선거제반 사항은 총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업무를 처리한다. 업무는 각 호와 같다.
 -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 2.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심의, 감사 및 승인
 - 3. 정 · 부학생회장 불신임 발의 및 의결
 - 4. 대의원 의장 및 부의장 선출권
 - 5.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승인
 -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1조(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건을 명시하여 4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제22조(정·부회장 불신임 결의) ① 대의원회는 정·부회장이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 ② 불신임 결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발의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해당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단,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학생단체(동아리 연합회)

- 제23조(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 제24조(구성) ① 동아리 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의 회장으로 구성된다.
 - ② 동아리 연합회의 임원은 동아리 연합회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다.
 - ③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총동아리를 대표한다.
 - ④ 동아리 연합회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48학점 이상 수강 중인 자로 한다.
 - ⑤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 제25조(직능) 동아리 연합회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친목ㆍ취미 단체의 구성ㆍ운영
 - 2. 동아리별 행사 실시

- 3. 학내 행사지원 및 봉사활동
- 제26조(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학생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동아리별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 제27조(회의) 동아리 연합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회원) 동아리별 회원은 자의에 의하여 가입하며, 2개 이상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다.
- 제29조(지도교수) 각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승인한 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지도 와 협조를 받는다.
- 제30조(인준) 각 동아리는 15명 이상 120명 이하(4개 이상의 학과(전공)에 분포하여야 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정의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해산) 각 동아리 활동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연간 사업계획실적을 평가하여 부실한 단체로 인정될 시는 해산시킬 수 있다.
- 제32조(등록) 동아리 연합회 및 각 동아리의 신규 및 재등록은 매년 3월말까지로 한다.
- 제33조(재정)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동아리 연합회 및 각 동아리에 대한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학생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제34조(목적) 삭제

제35조(구성) 삭제

제36조(기능) 삭제

제5장 재 정

- 제37조(회비) 신입생, 편입생을 포함하여 경운대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은 학생수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8조(재정관리)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본회의 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며, 회비 출납 및 보관은 경운대학교 경리과에 위임하고,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이 교학처장의 결재를 받은 뒤 시행한다.

<개정 2021.10.01.>

제39조(예산편성) ① 총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운영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kwrule_3_5_9.hwp 5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예산승인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의원회는 예산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는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예산이 소정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제40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처 학생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감사) 본회는 회계연도 30일전까지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대의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대의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 칙

- 제43조(회칙개정) ① 이 회칙의 개정은 학생회 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회칙 개정은 11월초에 한다.
 - ② 회부된 개정안은 학생회 임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4조(회칙보완) 이 회칙에 없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